

[별표 2]

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금 비율(제9조제3항 관련)

지원구분		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			
기업규모	소재지 (투자사업장 기준)	지원 비율			투자기업최 소부담 비율
		계	국비	지방비	
중소기업	비수도권	사업비의 50% 이하	사업비의 30% 이하	사업비의 20% 이하	사업비의 50%이상
	수도권	사업비의 40% 이하	사업비의 16% 이하	사업비의 24% 이하	사업비의 60% 이상
중견기업	비수도권	사업비의 40% 이하	사업비의 24% 이하	사업비의 16% 이하	사업비의 60% 이상
	수도권	사업비의 30% 이하	사업비의 12% 이하	사업비의 18% 이하	사업비의 70% 이상

\* 지원비율 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는 서로 간 비율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